

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제 2954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2021. 11. .
제 출 자 김 계 순 의원

1. 제안이유

2022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「지방자치법」의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과 회의록 공개 등 개정사항을 반영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의 인용규정 변경(안 제1조)
- 나.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(안 제8조의2)
- 다. 기록포결 시행에 따른 표경방법 구체화(안 제39조)
- 라. 회의록 배부와 주민에게 공개규정 마련(안 제53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 : 「지방자치법」
- 나. 그 밖의 사항
 - 1) 입법예고
 - 가) 예고기간 : 생략
 - 나) 예고결과 :
 - 2) 부서협의
 - 가) 협의기간 : 해당없음
 - 나) 협의결과 :
 - 3) 관련부서 : 의회사무국

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71조등”을 “제83조등”으로 한다.

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)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제14조제2항 중 “법 제63조”를 “법 제72조”로 한다.

제38조제1항 중 “선포”를 “의장석에서 선포”로 한다.

제3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전자투표의 경우에는 의장의 표결 선포전까지 재석확인이 된 의원만이 표결할 수 있다.

제41조제4항을 삭제한다.

제44조 중 “선포한다”를 “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48조 중 “있으며,”를 “있으며, 의원에게 배부하고”로, “시민에게 공개한다.[전문 개정 2008.1.4.]”를 “주민에게 공개한다.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.

제52조제4항 중 “지방자치법 제15조의2제2항”을 “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13조”로 한다.

제70조제1항 중 “법 제79조”를 “법 제91조”로 한다.

제72조를 삭제한다.

제79조제1항 중 “법 제86조”를 “법 제98조”로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에 참가할 수 없다.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. <단서 신설>

제41조 (표결방법) ① ~ ③ (생략)

④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 투표로 한다.

제44조 (표결결과 선포)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.

제48조(회의록의 기록·관리 및 공개) 회의록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기록·관리할 수 있으며, 김포시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한다.[전문 개정 200 8.1.4.] <단서 신설>

제52조 (위원회의 심사) ① ~ ③ (생략)

④ 위원회는 지방자치법제15조의2 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필요할 경우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

----- . -----
----- . 다만, 전자투표의 경우에는 의장의 표결 선포전까지 재석확인이 된 의원만이 표결할 수 있다.

제41조 (표결방법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제44조 (표결결과 선포) -----
-----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.

제48조(회의록의 기록·관리 및 공개) -----
----- 있으며, 의원에게 배부하고 -----
- 주민에게 공개한다. 다만,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.

제52조 (위원회의 심사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-----

청구취지(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·답변을 포함한다)를 들을 수 있다.

제70조 (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) ①의장은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분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.

② (생략)

제72조 (당사자의 심문과 발언) (삭제 2008.11.3) 제 8 장 질서

제79조 (징계의 요구와 회부) ①의장은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 의원(이하 “징계대상자”라 한다)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.

② ~ ⑤ (생략)

-.

제70조 (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) ①----- 법 제91조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72조 (당사자의 심문과 발언) <삭제>

제79조 (징계의 요구와 회부) ①-----
- 법 제98조-----

-----.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